

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 - 325호

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7월 29일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지침 공고

1. 수립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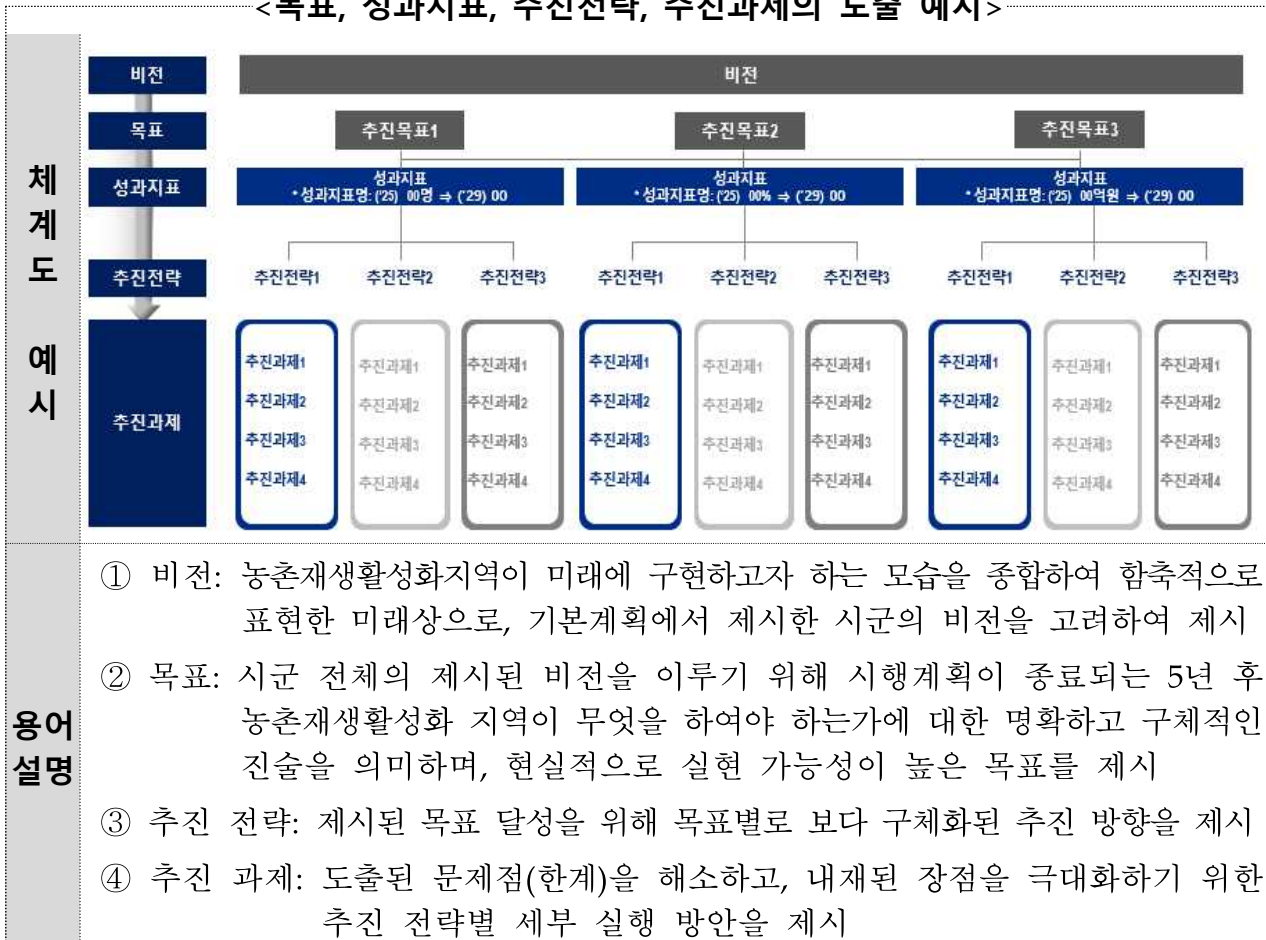
-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시·군이 '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'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기 위함
 - * '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(법 제6조)'과 '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(법 제7조)'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

2. 주요내용

- (성격)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발전 전략과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고 관련 세부사업들을 종합하여 실현하는 중기계획
- (구성) 시행계획은 개요, 현황 및 기초조사, 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, 세부추진방안으로 구성되며, 시도지사의 승인 후 확정
- (개요) 계획의 배경 및 목적, 범위, 성격, 사업추진 방식 및 추진체계 (계획수립·계획이행 추진체계, 주체별 역할), 수립 경위, 수립 방법 등을 기술

- (기초조사 및 실태분석) 기본계획의 기초조사를 활용하고, 주민 의견수렴 등으로 활성화지역의 현황, 문제점, 강점, 지역의 특성을 분석 진단
- (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) 방향과 목표설정, 추진전략 및 과제, 성과지표를 제시하고, 세부사업별 사업계획 수립

<목표, 성과지표, 추진전략, 추진과제의 도출 예시>



- (성과관리) 제시한 사업의 진행도와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지표와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점검·모니터링·평가하는 성과관리계획을 수립

□ (계획확정) 주민공청회, 기초정책심의회 심의, 시·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확정

3. 기타 참고사항

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지침」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(www.mafra.go.kr)을 통해 조회(알림소식 → 공지·공고)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(044-201-1559, 1560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